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약관

제1조 (약관의 적용) ①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이하 "회사"라 한다)간의 투자일임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약관은 투자일임재산의 매매거래시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별 약관과 함께 적용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조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투자일임"이란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고객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 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 2. "계좌"라 함은 투자일임과 관련하여 고객이 회사에 개설한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말한다.
- 3. "투자자산운용사"라 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아 투자일임자산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운용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4. "투자일임재산"이라 함은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은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운용 등으로 형성된 자산(현금포함)을 말한다.
- 5. "관계인수인"이란 회사와 같은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한 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 6. "이해관계인"인이란 회사의 임직원, 대주주, 계열회사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이해 관계인을 말한다.
- 7. "운용조건"이란 고객이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대하여 지정한 조건으로서 고객 스스로 투자전략의 선택, 편입 종목의 제한, 손실범위의 설정 등을 통해 결정된다. 회사는 고객별로 정해진 이러한 운용조건을 반영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다.

제3조 (투자자산운용사의 선임 및 변경) ① 고객은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중에서 투자일임재산의 관리 및 운용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를 직접 선임하여 투자를 하도록 한다.

- ② 회사는 투자일임재산의 관리 및 운용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에 대한 주요경력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자산운용사의 제재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고객이 선임한 투자자산운용사는 고객의 투자목적 등 운용조건에 따라 고객을 위한 투자일임업무를 수행한다.
- ⑤ 고객이 투자자산운용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요청하여야 한다.
- ⑥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산운용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산운용사에 대한 주요경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서면 또는 전화 등 증빙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투자자산운용사의 사망, 퇴직 등)가 있는 경우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 후 지체 없이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⑦ 회사는 제6항 단서에 따라 투자자산운용사를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서에는 "고객은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 표시하여야 하며,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⑧ 고객이 제7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⑨ 고객은 제6항 단서에 의한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게 투자자산운용사 변경을 요청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 (업무의 위탁) ① 회사는 투자일임업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계약의 체결과 해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를 위탁할 수 없다. 다만 투자일임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업무, 원화자산인 투자일임재산 총액의 100분의 20범위내에서의 운용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운용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및 투자일임재산에 속한 증권, 장내 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 주문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계약의 체결 및 계약기간) ① 고객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에서 정한 랩 유형별 최소가입금액이상의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탁 가능한 투자일임재산은 현금 또는 계약 체결 시 고객에게 안내한 금융투자상품으로 한다.
- ③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회사와 고객은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일 최소 30일 이전까지 고객에게 계약종료일을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통지 시에는 "고객은 계약종료일 이전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동일한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⑤ 고객이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 종료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동일한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 된 것으로 본다.

제6조 (금지행위)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으로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하여서는 아니된다.

- 1.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 다만, 인수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 다만,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기타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상 매입이 금지된 금융투자상품

제7조(투자일임방법 등) ①회사는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선호의 정도 및 투자예정기간 등을 서면 등으로 파악하여 투자일임업무에 반영하도록 한다.

- ②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 ③ 고객은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자가 상담일로부 터 2주 전에 투자자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경우에는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

직원도 상담할 수 있다.

④ 고객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정증권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정 증권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해지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고객자산의 인출 등) ① 고객은 계좌에서 투자일임재산종류에 따라 별지에서 정한 최소유지금액 기준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는 투자일임재산을 인출할 수 있으며,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일임재산의 종류별로 필요한 기간 이전에 회사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출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현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가능하다.

② 고객은 고객계좌에서 투자일임재산의 인출을 회사에 위탁할 수 없다.

제9조 (손익의 귀속) 회사에 대한 투자일임은 시장상황의 예측, 목표수익률의 달성, 투자성과 및 원금보전 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일임 결과 발생하는 손익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10조 (수수료) ① 회사는 투자일임에 따른 수수료를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의 범위 내에서 <별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는 회사 또는 투자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일임서비스뿐만 아니라 매매거래, 운용성과측정 및 기타 계좌관련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모두 포함한다.
- ③ 수수료의 체계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기본수수료 : 예탁자산을 기준으로 후취로 징수하는 운용수수료
 - 2. 성과보수: 계약기간 동안의 운용 성과에 따라 발생되는 성과수수료
 - 3. 선취수수료: 투자일임계약 시 운용개시일에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운용수수료
 - 4. 중도해지수수료 :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고객의 요청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징수하는 수수료
 - 5. 회사는 제 1~3호의 수수료와는 별도로 세금, 공과금, 집합투자증권 운용 보수 등의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지급의 무가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고객 계좌 내 현금에서 우선 지급된다. 다만, 계좌내 현금의 잔고가 회사가 징수하고자 하는 수수료보다 부족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수수료 부족분이 발생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통보일 미포함) 현금을 납부할 것을 청구하며, 고객은 동 기한내에 현금을 회사에 납부하거나 또는 계좌내 재산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충당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5영업일 이내에(통보일 미포함) 고객이 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좌내 재산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충당할 것을 지시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수수료의 충당을 위하여 미납수수료에 상당하는 고객계좌 내 재산을 고객과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 ⑥ 회사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객 계좌내 재산을 처분하여 수수료 부족분을 충당하거나 고객으로부터 현금 등을 납부받는 경우 연체료(11%)를 징수할 수 있다.
- ⑦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고객의 요청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일임 서비스 제공기간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하며, 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를 <별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1. 고객이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2. 고객이 정한 투자목적 등 및 운용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투자일임재산이 운용된 경우
- 3. 고객이 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아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4. 회사와 고객이 계약을 합의 해지하는 경우
- 5. 기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제11조 (자산의 소유권) ① 고객계좌 내 투자일임재산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으며, 회사는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의 길권 및 그 밖의 권리행사를 위임받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행사는 위임받을 수 있다.

- 1.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 2. 공개매수의 응모
- 3. 유상증자의 청약
- 4. 전환사채의 전환권의 행사
- 5.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
- 6. 교환사채의 교환청구
- 7. 파생결합증권의 권리의 행사
- 8.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
-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상 금지된 권리의 행사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투자결과 등의 통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이하 "투자일임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전자우편을 통하여 투자일임보고서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 할 수 있다.

- 1. 일임재산의 운용경과 및 손익현황
- 2. 투자일임재산의 매매일자, 매매가격, 위탁수수료 및 각종 세금 등 운용현황
- 3.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재산의 종류별 잔액현황,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손익
- 4. 투자일임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그 시기 및 금액
- 5. 투자일임재산을 실제로 운용한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 6. 성과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기준지표의 성과와 성과보수 지급 내역
- 7. 자본시장법 등 관계 법령상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13조 (고객의 변경사항 통지)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일임권의 범위 기타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정보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지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4조 (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손실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 고객지시에 따른 운용으로 인한 손실
- 2. 서류 및 인감(또는 서명 감) 등을 상당한 주의로 대조하고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여 업무처리 하였음에도 위조, 도용, 기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15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회사는 천재지변, 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와 지연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16조 (계약의 해지) ① 고객은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고객의 계약 위반내용이 시정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고객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 절차 등과 같은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체납처분이 있는 경우,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 설정되어 투자일임자산의 운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 2. 고객의 예탁재산 인출로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별지>에서 정한 최소가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단, 제10조에 따른 수수료, 제세공과금, 기타필요경비의 인출로 미달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고객이 4회(계약한 연도에는 3회)이상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 변경에 대하여 회신하지 않는 경우
- ③ 계약의 해지는 투자일임에 의하여 실행된 해지일 이전의 거래와 해지일 이전에 제공된 투자일임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이 지불하여야 할 수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④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고객의 서면상의 지시에 의한 거래를 제외하고는 모든 투자일임업무는 중단되며 회사는 계좌 내모든 고객재산을 고객에게 환급하거나 고객이 지정한 고객계좌 등으로 인도한다. 단, 계좌내의 고객자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등 법률상 제한조치가 있어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 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통지의 효력 등) ①서면에 의한 통지의 효력은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②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고객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 13조에 의한 변경 통지를 게을리 함으로 인하여 회사가 제 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 통지 또는 기타 서류가 고객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의 해지 및 이에 준하는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19조(관계법규 등의 준용)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20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1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4년 0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4년 10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8년 08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보 첫

이 약관은 2009년 02월 0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년 07월 0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년 01월 0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년 08월 0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년 02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경

이 약관은 2014년 08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년 05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0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이 약관은 2016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11월 0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년 7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첫

이 약관은 2017년 9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

이 약관은 2017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년 1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년 4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별지> 투자일임 수수료의 산정 기준

□ 운용모델에 따른 최소 가입금액 및 수수료율 <체차적용>

2018.04.02 기준

			최소가입금액 최저유지금액	선취수수료 (최초계약시 1회)	기본수수료		서기보스	중도해지	
구 분	운용모델				1년차	2년차이후	성과보수	수수료	
지 점 운용형	맞춤형	기본형		3천만원	-	2.6%			
		성과보수형		3천만원	-	2.0%			
		성과보수형_B		3천만원	1.0%	1.0%		고객과합의	선취환급금의 80%
		펀드운용형		1천만원	-	1.0%		고객과합의	
		맞춤형		5천만원	고객과합의			선취환급금의 80%	
본 운용형	주식형E	국내자문형	기본형	3천만원		3억원 이하 2.6% 3억원 초과 2.2%			
			기논영	(2천5백만원)	-				
			일반형	3천만원	1.0%	3억원 이하 1.6% 3억원 초과 1.2%			선취환급금의 80%
			[컬빈영 	(2천5백만원)	1.0%				신위완급금의 60%
			일반형	3천만원	1.4%	1.2%			선취환급금의 80%
			성과보수형	3천만원		3억원 이하 1.6%		그게기하이	
				(2천5백만원)	3억원 초과 1.2%		5과 1.2%	고객과합의	
		해외자문형	기본형	5천만원	-	2.6%			
			일반형	5천만원	1.4%	1.2%			선취환급금의 80%
			성과보수형	5천만원	-	2.4%		고객과합의	
			일반형 H	5천만원	1.4%	1.2% 2.2%			선취환급금의 80%
			성과보수형 H	5천만원	1.4%	1.0%	2.0%	고객과합의	선취환급금의 80%
		ETF운용형	기본형	2천만원 (1천5백만원)	-	1.2%			
			일반형	2천만원 (1천5백만원)	0.6%	0.6%			선취환급금의 80%
	채권/ MMW형	증금형	수시형	- (+ 12 7 7 12 12)	_	개인0.08%, 법인0.05%			
		MMW				0.05%			
		단기자금운용형		10억원	_	0.1% (출금시징수)			
	맞춤형	맞춤형		5천만원	고객과합의		I	선취환급금의 80%	
		맞춤형 펀드랩		5천만원	_	0.5%			
	펀드형	적립식 펀드랩		10만원	-	0.05%(집합투자증권관련 보수별도			
		주식혼합형 펀드랩		5천만원	0.5%	1.0%			선취환급금의 80%
		전단채 펀드랩		1천만원	-	0.2%			
		글로벌자산 배분(펀드)	적극투자형(선취보 수형)	10만원	1.0%	0.6%			선취환급금의 80%
			위험중립형(선취보 수형)	10만원	0.8%	0.6%			선취환급금의 80%
			적극투자형(후취보 수형)	10만원	-	1.4%			
			위험중립형(후취보	10만원	-	1.2%			
			안정추구형(후취보 수형)	10만원	-	1.0%			
		글로벌자산	적극투자형(선취보 수형)	5천만원	1.4%	1.2%			선취환급금의80%
		배분(ETF)	위험중립형(후취보 수형)	5천만원	-	2.6%			

1. 선취수수료

- 1) 선취수수료는 투자일임 신규계약시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운용 개시일에 최초 1회 징수합니다.
- 2) 고객이 신규 계약 후 1년 이내 중도해지 시 계약 단위 잔존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선취수수료를 반환합니다

2. 기본수수료

1) 기본수수료는 분기중 예탁재산의 평균잔고금액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매년 1,4,7,10월의 첫 영업일에 분기단위로 징수합니다 (원미만 절사)

- 2) 구간별 수수료 적용 : 총예탁재산을 금액 구간별로 분류하여 수수료율을 체차 적용합니다. (멀티인컴 포트폴리오 서비스는 금액 구간별로 차등적용)
- 3) 증금형MMW(수시형)는 '투자일임자산 전일 평가금액 x 기본 수수료율 x(경과일수/36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매영업일에 징수합니다.
- 4) 증금형MMW(기간형)과 단기자금운용형은 '계약금액 × 기본 수수료율 ×(경과일수/36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출금시(중도 출금 포함) 징수합니다.
- 5) 상기 운용모델 중 일반형 H와 성과보수형 H의 기본 수수료는 18년 4월 이후에 신규 상품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2. 성과보수

성과보수는 기준지표(Bench Mark)수익률을 초과한 운용성과에 따라 발생되는 성과보수를 일정기간 단위로 정산하여 계약 만료일 또는 계약해지일에 징수합니다.

- 1) 성과수수료는 연 단위로 계산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에 징수합니다. (원미만 절사)
- 3. 중도해지 수수료
 - 1)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고객의 요청으로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징수하는 수수료로, 모델별 징수 기준에 따라 해지일에 징수합니다.
 - 2) 운용상 발생 가능 환매수수료로 고객재산의 운용과정에서 현금성 자산 또는 집합투자증권의 개별 약관에 의해 환매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4. 집합투자증권의 중도환매수수료와 운용 보수 등은 해당 상품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수합니다.
- 5. 위의 투자일임수수료율(성과보수 포함)은 고객과 합의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고객의 자산 배분 결과에 따라 운용되는 맞춤형(본사운용형, 지점운용형) 모델은 계좌에 편입되는 자산별 편입비중과 수수료 수준을 감안하여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